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0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규백, 오혜진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박정현

변론 종결2023. 7. 19.

판결 선고2023. 8. 23.

주 문

1. 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0지분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합의는 1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E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20 지분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합의는 21,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 및 E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36,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금원을, 피고 C은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전710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6. "D은 원고에게 11,170,16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3.부터 2006.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 3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5.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부동산 권리관계 변동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8. 3.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 및 E, D,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 B 및 E, D, G은 2018.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가 2/5 지분, E가 3/5 지분의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13.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E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E는 2021. 9. 9.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지분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하고, 2021.

9. 10. 이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 45,000,000원),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인 2021. 8.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D에 대하여 '11,170,16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3.부터 2006.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 33,3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시가 22,750,000원[= 91,000,000원(2018. 3.과 근접한 2018. 8. 실거래가에 비추어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 136,000,000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5,000,000원)×상속지분 1/4]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 원리금만 하여도 41,276,917원(원금 11,170,166원+지연손해금 30,073,451원(2018. 3. 21. 기준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음)+독촉절차비용 33,300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11,170,166원	2003-10-23	2006-1-31	연 17%	832일	4,328,515원
11,170,166원	2006-2-1	2015-9-30	연 20%	3,529일	21,599,734원
11,170,166원	2015-10-1	2018-3-21	연 15%	903일	4,145,202원
합계	30,073,451원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1/4)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B 및 E에게 2:3의 비율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피고 B 및 E와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 및 E,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 및 E가 망인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기여분이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피고들 주장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협이가 함께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B 및 E의 기여분에 대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 B 및 E와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및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1)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7. 19.) 기준
 D에 대하여 50,209,990원{원금 11,170,166원+지연손해금 39,006,524원(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음)+독촉절차비용 33,300원}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11,170,166원	2003-10-23	2006-1-31	연 17%	832일	4,328,515원
11,170,166원	2006-2-1	2015-9-30	연 20%	3,529일	21,599,734원
11,170,166원	2015-10-1	2023-7-19	연 15%	2,849일	13,078,275원
합계	39,006,524원				

(2)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면적(57.6㎡)의 부동산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23. 3. 28.경 실거래가가 190,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2023. 3. 28.보다 가까운 일자에 이루어진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며,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19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45,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36,250,000원[= 145,000,000(190,000,000원-45,000,000원)×1/4]이다.

(3) 수익자 및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1/4은 피고 B 및 E에게 2:3의 비율로 이전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 B가 취득한 이득은 14,500,000원(36,250,000원×2/5), 수익자 E 및 그 전득자인 피고 C이 취득한 이득은 21,750,000원(36,250,000원×3/5)이 된다.

결국 원고는 앞에서 본 (1)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2)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3) 수익자 및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취득한 이득의 한도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원고는 피고별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속지분 1/4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각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1) 수익자인 피고 B와 채무자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20지분($1/4 \times 2/5$)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1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수익자 E와 채무자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20 지분($1/4 \times 3/5$)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21,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2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조은아

별지